

‘젊은 소비시장’ 베트남 몰려가는 한국 기업들

2018-02-21, MIDAS, 김영대기자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U-23 축구대표팀의 귀국 카퍼레이드를 보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하노이 시민들. EPA_연합뉴스

싼 인건비 덕분에 생산기지로 각광받아온 베트남. 최근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잠재력 큰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도 소비재를 중심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다.

60%가 40세 미만... 6%대 경제성장률 구가

한반도의 1.5배 크기인 베트남의 인구는 약 9천600만 명이다. 40세 미만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3분의 2가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세대란 뜻이다.

2000년 이래 경제성장률은 연 6%대로, 동남아시아 신흥국 가운데 제일 가파르다. 전년 대비 소비시장 증가율도 2016년 10.20%, 2017년 10.86% 등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천306달러로 한국(2만9천730달러)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경제중심지 호찌민의 1인당 GDP는 5천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은행 HSBC는 베트남 중산층이 2012년 1천200만 명에서 2020년 3천3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외국 기업의 투자가 원동력인데, 그 중 으뜸은 한국이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한국의 투자액은 575억1천만 달러(61조4천억 원)에 달한다.

한국의 대(對)베트남 수출도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베트남 수출은 전년보다 47% 늘었다. 같은 기간 아세안(ASEAN) 수출증가율(27.8%)의 두 배에 가깝다. 수출 대상 국가 순위도 2014년 6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한국 기업은 베트남의 성장동력까지 바뀌었다. 과거에는 섬유,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수출품목 1위였으나, 2013년 이래로는 휴대전화·전자제품이 최고 주력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다. 약 20만 명을 고용해 삼성전자 전체 스마트폰 물량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다.



다양한 즐길 거리를 갖춘 롯데마트는 베트남의 쇼핑 문화를 바꿔놓고 있다. 베트남 남부 도시 건너에 위치한 롯데마트 11호점. 롯데마트 제공

K팝 바람 이어 '박항서 매직' ... 한류 넘실대는 베트남

베트남에서 한류 바람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오래 전부터 K팝이 젊은 층을 사로잡은 데 이어, 최근에는 '박항서 매직' 이 전 연령대를 한류로 끌어들이는 분위기다. 박항서 감독은 만년 하위권이던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단숨에 AFC(아시아축구연맹) U-23(23세 이하) 챔피언십 결승으로 이끌었다.

또 하나의 한류는 '한국 상품' 이다. 롯데백화점은 부유층의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며 매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기존 베트남 백화점은 대형마트와 개념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롯데백화점이 한국식 멤버십 제도와 세련된 마케팅 기법을 선보인 뒤 '백화점=고급매장' 이란 인식이 자리 잡혔다.

영화관과 문화센터, 푸트코드 등이 결합된 롯데마트는 대형마트가 단순히 장만 보는 곳이 아닌,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란 점을 일깨우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또한 롯데리아는 경쟁한 글로벌 패스트푸드들을 제치고 매장 수 1위(250개)를 달리고 있다.

CJ그룹도 베트남 각 업종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갓 구운 신선한 빵’ 을 모토로 내건 뚜레쥬르는 현지 업체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에도 매출이 연 10% 이상씩 늘고 있다. CJ오쇼핑은 홈쇼핑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압도적 1위다. 처음으로 생방송 판매를 시작해 순식간에 시장을 장악했다. 현재도 생방송이 가능한 업체는 CJ오쇼핑이 유일하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베트남의 K뷰티 전도사다. 각각 매년 40~50% 매출이 신장하면서 고급화장품 분야에서 1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삼양식품은 ‘한국의 매운맛’ 을 전파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특히 ‘불닭볶음면’ 이 SNS를 통해 젊은 층에 큰 반향을 일으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커졌다. 최근에는 ‘짜짜로니’ ‘수타면’ 이 바통을 이어받고 있다.

최근 베트남 인프라 건설 시장동향 및 이슈

2018-03-06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인프라 건설시장, 2025년까지 연평균 10.4% 성장할 것 -
- PPP, BOT 등 베트남 정부는 민자 유치 확대 계획 -
- 현지화 기반 구축, 주요 의사결정권자와 인맥 강화, 공격적인 사업 제안으로 베트남 시장 관심 가져야 -

▣ 베트남 건설·인프라 시장현황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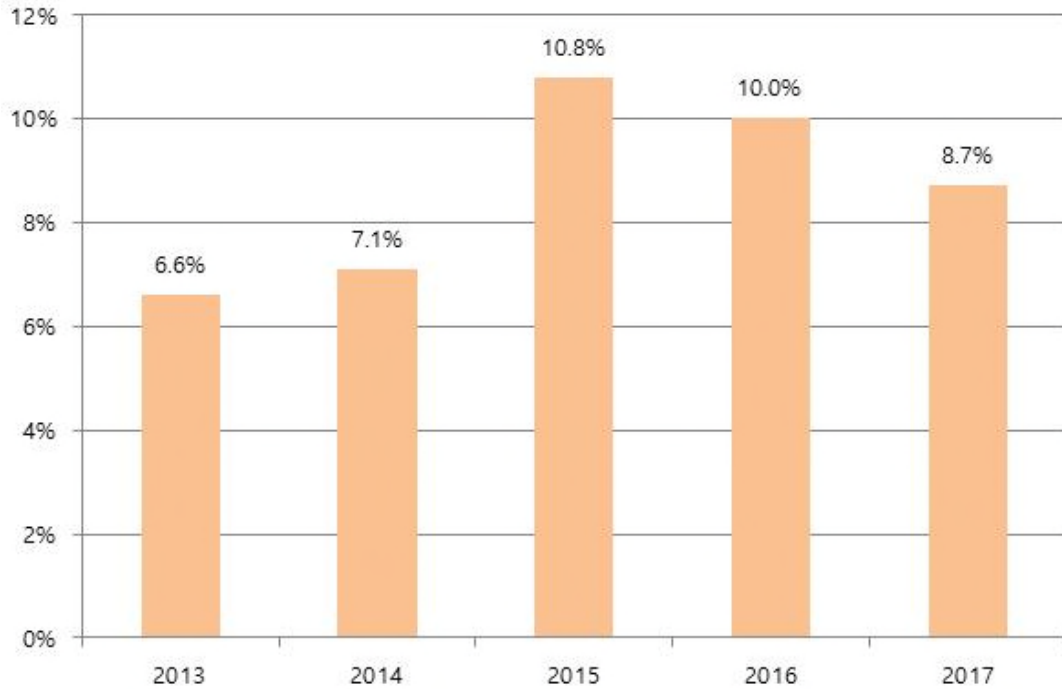
- 2017년 베트남 건설 시장규모, 전년대비 8.7% 증가

- 2017년 베트남 건설 시장규모는 전년에 비해 8.7% 증가한 약 12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베트남 전체 GDP 대비 5.73%의 비중을 차지함(베트남 통계청).

- 2018년 베트남 건설시장은 베트남 경제 성장과 함께 교통, 에너지, 통신, 주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요가 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의 유입 증가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한 해 베트남의 사회투자자본 중 외국인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3.7%이며,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12.8% 상승함(베트남 통계청).

최근 5년간 베트남 건설 시장규모 증감률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 베트남 인프라 경쟁력 지수 순위는 79 위

-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하는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2017~2018(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 지수는 137 개국 중 79 위를 기록했음. 이는 5년전 95 위보다 16 단계 상승한 것임. 도로, 철도, 항만 등 모든 인프라 부문에서 이전보다 크게 상승함.

베트남 주변국 인프라 경쟁력 지수

국가명	인프라 전체 순위	도로	철도	항만	항공	전력
베트남	79	92	59	82	103	90
싱가포르	2	2	4	2	1	3
말레이시아	22	23	14	20	21	36
태국	43	59	72	63	39	57
인도네시아	52	64	30	72	51	86
필리핀	97	104	91	114	124	92
라오스	102	94	-	127	101	75
캄보디아	106	99	94	81	106	106

자료원: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세계경제포럼(WEF)

○ 부문별 주요 동향

- (농촌 개발) 베트남 정부는 농촌지역 개발 계획(Decision No 1600/QD-TTg)을 승인하고, 학교·병원·도로·수처리시설 등 해당 지역 사회·인프라 건설을 위해 2020년까지 86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재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함.

- (철도) '2020 베트남 철도개발전략 및 비전 2050'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철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임. 해당 계획에 따라 베트남은 2030년까지 160~200km/h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철로를 깔고, 2050년까지 남-북 간 복선(double track line) 고속철도(350km/h 해당 속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임.

- (항구) '2020-2030 베트남 항구시스템 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6개 지역(북부, 중북부, 중부, 중남부, 남동부, 메콩델타지역) 항구 인프라시설을 개발하고 주요 도로 및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임.

- (주택)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1인당 주거 면적을 25㎡까지 확대하고, 서민용·저임금 근로자용 주택 등을 포함한 중급 아파트 공급을 늘릴 계획임. 저소득 농촌 가구를 위한 다양한 사회주택 프로그램 실시도 확대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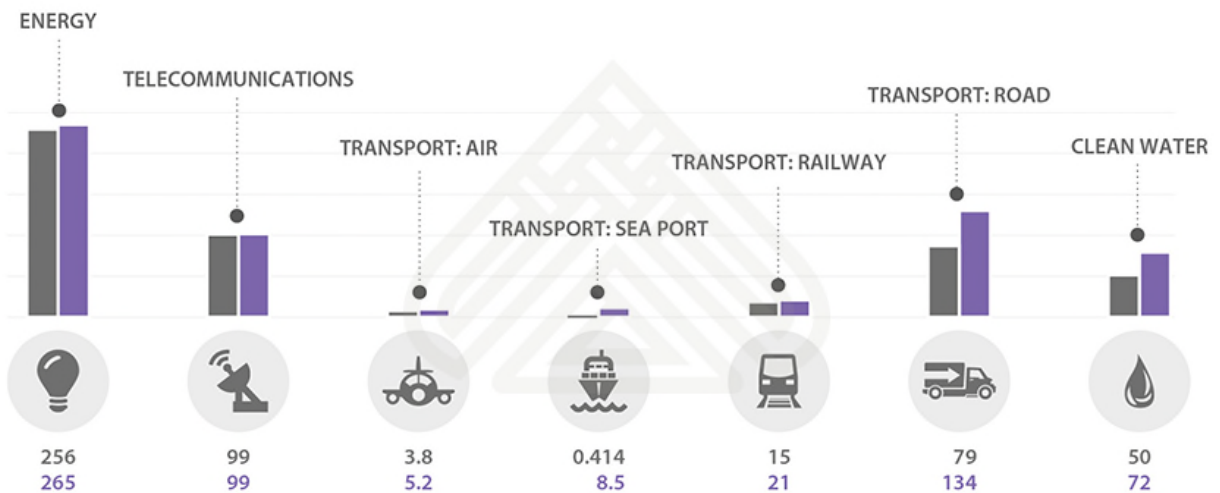
2016~2040년 분야별 베트남 인프라 투자 수요 규모

Infrastructure investment forecast 2016-2040 – Sector wise in terms of billion USD

Unit: Billion USD

■ Calculated in current investment

■ Calculated in investment demand



Source: Global Infrastructure Outlook 2017

Graphic © Asia Briefing Ltd.

자료원: 2017 세계 인프라 전망 보고서

▣ 최근 베트남 정부 주도 주요 건설·인프라 프로젝트 및 이슈

○ 첫째, 호찌민시 떤선녓(Tan Son Nhat)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

- 호찌민시 떤선녓 국제공항은 베트남 최대 국제공항 중 하나로 연 2500 만~2800 만 명이 사용 가능한 규모임. 하지만 2015 년부터 연간 이용객이 이를 이미 초과해 혼잡이 발생하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음.

-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5 년 떤선녓 국제공항 연간이용객은 2650 만 명, 2016 년 3200 만 명, 2017 년 3600 만 명으로 추정됨. 베트남 항공관리국(CAAV)은 2025 년까지 최대 5000 만~6500 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베트남 총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에 공항 터미널 숫자를 4 개로 늘리고 연간 수용 인원을 7000 만 명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 그리고 외부전문가 영입 등을 주문한 상태임.

○ 둘째, 베트남 남부 롱탄 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

- 롱탄 국제공항 프로젝트는 현재 베트남 남부 최대 공항인 떤선녓 공항의 수용능력 초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세운 국책 사업으로,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 롱탄현에 위치할 예정임.

- 2011 년 6 월에 베트남 정부는 마스터플랜(Decision No. 909/QD-TTg)을 발표했으며, 2017 년 11 월 베트남 국회는 롱탄(Long Thanh) 국제공항 부지 정리(land clearance)를 위해 약 10 억 달러의 예산 책정안을 통과시킴.

- 롱탄 국제공항은 3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며 1 단계는 2025 년까지 활주로 1 곳과 여객터미널을 가동시키며 연간 2500 만 명의 여객과 120 만 톤의 화물을 취급할 예정임.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1 억명과 500 만톤의 화물 취급이 가능할 전망임.

○ 셋째, 호찌민시 투티엠(Thu Thiem) 지구 개발 박차

- 호찌민시는 1 군(District 1)을 비롯한 중심업무지구(CBD, Central Business District)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 군의 투티엠(Thu Thiem) 지구를 적극 개발할 계획임.

- 투티엠 지구는 향후 지하철 2 호선 개통과 투티엠교(Thu Thiem bridge 2, 3, 4) 건설로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개발자들이 학교·아파트·병원·쇼핑시설·호텔·사무실 등의 건설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다이광민(Dai Quang Minh)사는 투티엠 지구 150ha 에 걸쳐 빌라, 고급 아파트, 5성급 호텔, 병원 등을 개발할 계획이며 껍룩팟(Quoc Loc Phat)사는 3 억 2300 만 달러를 투자해 복합상가를 지을 예정. 일부 우리 기업들 역시 투티엠 지역 개발 참여를 확정지음.

- 우리나라 건설 업계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투티엠 지역이 호찌민시의 새로운 중심업무지구(CBD)로 계획·개발될 것이며 향후 외국·로컬 기업들의 신규 입주 및 사무실 이전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힘.

○ 넷째, 최근 BOT* 방식으로 지어진 고속도로에서 과도한 톨게이트 요금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 발생 중임.

*** BOT(Built-Operation-Transfer)**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시행자(건설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마친 후 자본설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대개 해당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함. 이러한 방식은 주로 재정적자의 누적 외채문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이나 국가사업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인프라 개발에 도입되고 있음(자료원: 매일경제용어사전)

- 베트남 정부는 막대한 인프라 건설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많은 건설 프로젝트들을 민자 유치를 통해 진행 중임. 최근 발생하고 있는 톨게이트 비용 이슈 역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회사들이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 톨게이트를 설치했지만 부적합한 부스 위치 및 비용이 과도하다며 베트남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음.

- 톨게이트·차종별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1 회당 대략 3 만 5000~16 만 동(약 1700~8000 원)의 톨게이트 비용이 적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많은 물류 기업이 물류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함.

- 이에 베트남 교통부를 포함한 관련 주요 부처들은 일부 지역 톨게이트 비용을 50%까지 인하하도록 했으며, 반발이 거센 통행구간은 일정 기간 통행 비용을 면제함.

- 한편, 관련 현지 전문가들은 "톨게이트 비용을 한시적으로 인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톨게이트 위치 자체를 이동시키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라고 밝힘.

▣ 베트남의 사회 투자 자원 여건은 악화

○ 베트남 사회간접자본 투자 자원은 크게 정부 예산과 ODA 로 나뉨. 그런데 정부 예산 집행은 베트남 정부의 예산 부족, 낮은 집행률, 이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등의 문제점이 존재함.

-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 사회 투자 개발에서 ODA 수원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대베트남 1, 2 위 ODA 공여 국제기구인 월드뱅크와 아시아개발은행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국가 기준으로는 일본, 한국 순).

· (참고)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2011~2015 년간 총 ODA 수여금액은 이전의 동기간 대비 5.36% 상승한 264 억 달러임. 이 중 집행액은 232 억 2000 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높은 집행율을 기록함. 그러나

정부 예산 집행의 경우 2017년 1~5월 기간 19%에 불과했으며, 이는 베트남 지하철 공사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 지연에 영향을 미침.

○ 베트남 경제 성장 및 소득 수준 향상으로 베트남 ODA 수원 여건이 악화되고 용자 조건이 바뀌는 중임.

- 베트남은 월드뱅크(WB) 분류 기준에 따라 하위(lower) 소득국가에서 중간하위(lower-middle) 소득국가로 격상되면서 월드뱅크는 2017년 7월부로 베트남을 우대 용자 국가에서 제외하고 기존보다 우대조건이 낮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 공여 대상국으로 전환함.

-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2019년 1월부터 현재 베트남에 제공하고 있는 우대 용자인 ADF(아시아개발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OCR(일반 자원, Ordinary Capital Resources)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임.

- 베트남 정부는 ODA 수원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ODA 자금 사용·관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ODA 운용 방안이 포함된 법령을 발표한 바 있음(참고 법령: Decision No.251/QĐ-TTg, Decree No.16/2016/ND-CP).

▣ **베트남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

○ 베트남 기획투자부, 2030년까지 인프라 개발을 위해 20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전망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는 2020~2030년 동안 2000억 달러 이상의 인프라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 수요가 점차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전력발전 부문을 필두로 베트남 건설·인프라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글로벌 인프라 전망 보고서는 베트남의 인프라 투자동향이 현재와 같은 흐름을 유지한다면 2040년 인프라 수요 대비 약 83%를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함.

○ 인프라 자원 마련은 PPP, BOT 등 민간 투자 유치로 총당

- 베트남 인프라 개발 수요는 높지만 ODA 수원 여건 악화, 공공부채 증가 등과 같이 베트남의 인프라 자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PPP 법을 개정하는 등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BOT(Built-Operation-Transfer) 방식의 프로젝트 수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의 주요 투자 유치 희망 인프라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Other information
닌빈(Ninh Binh)-탄화(Thanh Hoa) -응이선(Nghi Son) 구간 남북 고속도로	- 위치: 닌빈성, 탄화성 - 총 투자규모: 18억 6700만 달러 - 투자 방식: PPP
롱탄(Long Thanh) 국제공항(1단계)	- 위치: Dong Nai - 총 투자규모: 56억 2000만 달러 - 투자 방식: PPP, BOT

<p>깜란(Cam Lanh) 국제공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칸화성 - 총 투자규모: 2억 1200만 달러 - 투자 방식: PPP, BOT
<p>라오까이(Lao Cai) 공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Lao Cai - 총 투자규모: 6000만 달러 - 투자 방식: PPP
<p>린찌에우(Lien Chieu) 항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Da Nang - 총 투자규모: 6500만 달러 - 투자 방식: PPP

자료원: 주미국 베트남 대사관 홈페이지

□ 시사점

○ 베트남 인프라·건설시장, 2025년까지 연평균 10.4% 성장할 것

- BMI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5년 동안 베트남 인프라·건설시장은 연평균 10.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 호찌민, 하노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교통 분야 인프라 개발 수요가 높음. 베트남 정부 주도의 에너지·교육·의료시설·중급 아파트 투자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 베트남 인프라·건설시장은 많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불안 요소들도 안고 있음.

- 대표적으로 베트남 정부의 재정 부족, 이에 따른 프로젝트 지연, 그리고 투자 이후 운영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자 회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존재함.
- 인프라 투자 자원 마련과 관련해 베트남 정부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PPP, BOT와 같은 민간 참여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며, 베트남 기획투자부(MPI)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현재 새로운 PPP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 중임(2018년 말 국회 제출 예정).
 - (참고) 현재 PPP 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Decree No.15/2015/ND-CP(2015년 4월 발표)와 Decree No.30/2015/ND-CP(2015년 5월 발표) 등이 있는데, 동 시행령에서는 프로젝트 실패 시 리스크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수익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내용들이 생략돼 있음.

○ 우리 기업들을 위한 베트남 인프라 시장진출 조언

- 첫째, 베트남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낙찰받기는 다소 어려운 환경임을 유의해야 함. 특히 베트남의 행정 절차 및 제도 투명성이 아직 불투명하고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 방안 모색, 현지 법인 설립 등 현지화 기반 구축 노력이 요구됨.

- 둘째,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인사와의 유대 관계 형성은 프로젝트 수주에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인맥 관리에 힘써야 함.
- 셋째, 베트남 정부의 인프라 개발 의욕은 높지만 이를 위한 관련 지식 및 기술력은 아직 뒤떨어지는 실정임. 우리 기업들이 A 부터 Z 까지 베트남 현지 실정에 맞는 사업을 베트남 정부에 공격적으로 제안하고, 베트남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함.

베트남 식품안전 관련 비관세장벽 대거 완화

2018-03-06 신선영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신규 시행령 2월 2일 공표와 동시에 발효 -
- 식품안전 관련 각종 행정수속 간소화·기업의 자율 및 책임 확대가 주요 골자 -
- 급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관련 행정 당국 ‘비상’ , 당분간 행정 혼란 불가피 -

□ 식품안전 관련 행정 절차 ‘손질’ 에 나선 베트남 정부

○ 베트남 정부, 식품안전 관련 신규 시행령 발표

- 2018년 2월 2일,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 시행령(Decree No.15/2018/ND-CP)이 공표와 동시에 발효됨.

- 신규 시행령은 동일 명칭의 기존 시행령(2012년 4월 25일자 Decree No.38/2012/ND-CP)을 대체하는 것으로, 동 시행령 발효로 식품안전 관련 소관 부처 간 업무 분담 및 협업 규정을 명시한 합동 시행규칙(2014년 4월 9일자 Joint Circular No.13/2014/TTLT-BYT-BNNPTNT-BCT)의 2장(Chapter 2) 모든 조항도 효력이 종료됐음.

○ ‘허울뿐인’ 국내 인증 제도, 비효율적 행정 처리에 따른 기업 불만이 시행령 개정의 주 배경

- 베트남 자체적으로 실시해 온 식품 안전성 인증 제도(식품안전 규정 요건 충족 인증서 발급제)가 현지 시장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위생안전 보장과 관련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음.

* 기업이 제출한 서류상 내용에 근거한 인증서 발급과 인증서 취득 제품의 식품안전 관련 품질에 대한 인증서 발급 당국의 책임 회피가 주요 문제로 지적

- 과도한 서류 제출 및 행정 절차에 따른 기업 불만과 행정력 낭비 지적 끊이지 않아 왔던 게 사실

*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에 따르면 2015년 약 3만 5000건에 달했던 베트남 식품 안전국(보건부 산하)의 인증서 발급 건수는 2017년 약 4만 5000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됨.

- 신규 시행령 공표로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 13 개 장(Chapter) 44 개 조항으로 구성된 신규 시행령(Decree No.15/2018/ND-CP)은 기존 시행령과 비교해 총 11 개의 주요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식품안전 관련 형식적 행정 절차 축소가 주요 골자로, 전반적으로 식품 생산자와 판매자가 식품안전 관련 품질에 대해 주체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신규 법령 발효에 따른 주요 변동 사항

- (변동 사항 1) 식품안전 규정 요건 충족 공표서류 등록 및 인증서 발급제 폐지
 - 일부 건강 관련 식품을 제외한 대다수 식품 및 유관 제품에 대해 기업 자체적으로 상품 안정성을 공표케 하고, 식품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함.

식품 품목별 식품안전 관련 상품 안전성 공표 방식

구분	기업 자체적 상품 공표	서류 접수 행정기관에 의한 상품 공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된 가공 식품 · 식품 첨가제 · 식품 가공 보조제 · 식품 용기 · 식품 접촉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호식품(건강 보조제, 식이 보조제) · 의약품 영양식품 · 특수 식이용 식품 · 36 개월 이하 유아용 영양식품 · 새로운 효능을 지닌 혼합 식품첨가제 · 식품 사용 허용 첨가제 리스트에 미포함된 식품첨가제 · 베트남 보건부가 규정한 사용 대상에 적합하지 식품 첨가제
관할 기관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체 상품 공표서 1부 (동 시행령 첨부 부록 1 - 2 번 양식) ② 해당 상품의 식품안전검사 결과표 (원본 또는 인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제품의 경우 ① 상품 공표서 1부 (동 시행령 첨부 부록 1 - 2 번 양식) ② 수출 국가 또는 원산지 국가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수출증명서(Certificate of Exportation) 또는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로서 사용자의 안전 또는 해당 국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판매 사실을 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 ③ 해당 상품의 식품안전검사 결과표 (원본 또는 인증 사본)** ④ 수출 국가 또는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공표된 상품의 효능 또는 상품의

		<p>효능을 발휘하게 하는 구성 성분의 효능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 (개인 또는 단체의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p> <p>⑤ 수입 건강보호식품의 경우 GMP 기준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서 (2019 년 7 월 1 일부터 적용)</p> <p>*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식품·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 조건으로서 우수식품·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국내 생산 제품일 경우 · 수입 제품의 상품 공표서 등록 시 제출서류 중 ①, ③, ④, ⑤ ·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인증서 취득이 요구될 시)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품 생산 가공용 상품 및 생산·수입 원료 또는 개인·단체의 내부 생산용으로써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상품과 생산·수입 원료는 제외 · 상품명, 원산지, 성분 등이 변경될 시, 기업 자체적인 상품 재공표 필요 · 이외 기타 사항이 변동될 시, 해당 변동 내용에 대해 문서 형태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서류 송부 직후부터 해당 상품의 생산 및 판매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명, 원산지, 성분 등이 변경될 시, 상품 재공표가 요구됨. · 이외 기타 사항이 변동될 시, 해당 변동 내용에 대해 문서 형태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서류 송부 직후부터 해당 상품의 생산 및 판매가 가능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제출 서류 관련 공통 요건

모두 베트남어로 작성할 것을 요구.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하며, 관련 자료는 상품 공표서 등록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을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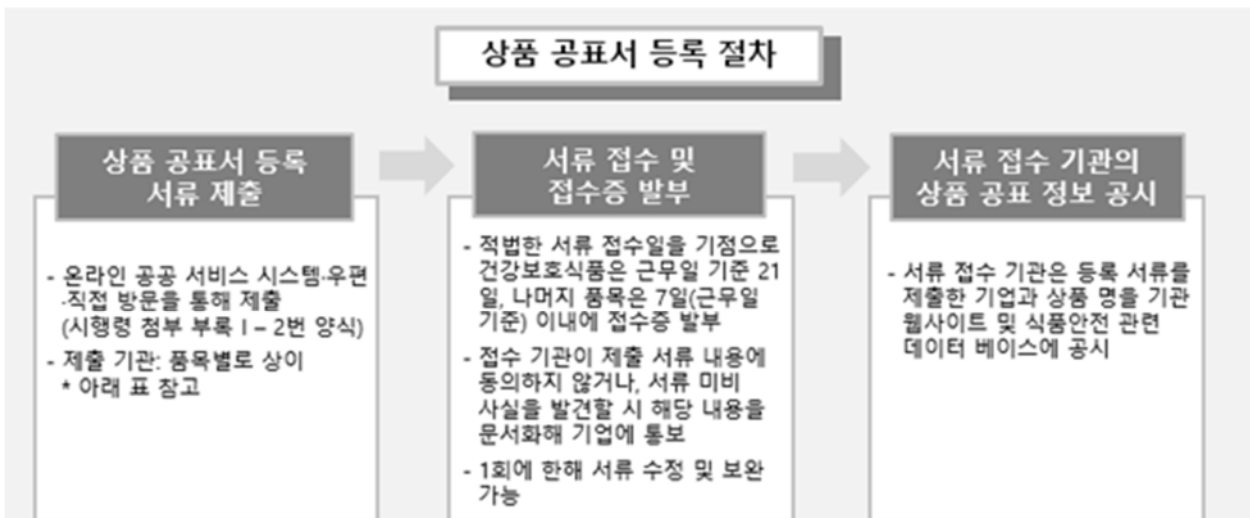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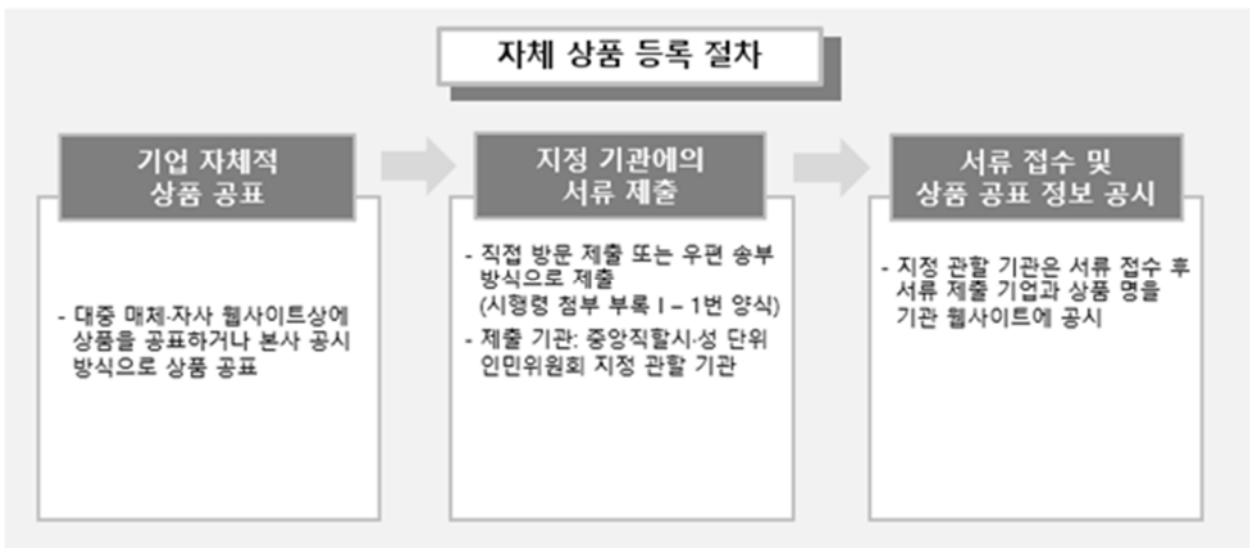
** 식품안전검사 결과표 관련 요건

· (발급 기관 및 기한)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ISO 17025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발급일이 상품 공표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여야 함.

(검사 결과 내용) 국제 규정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원칙에 따라 보건부가 발행한 식품안전 기준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보건부발행 관련 규정 부재 시에는 개인·단체가 공표한 관련 기준 또는 표준에 따른 안전 기준 사항을 포함해야 함.

***식품 또는 식품 구성 성분의 효능 입증 자료와 관련한 요건

상품 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 자료로서 상품을 구성하는 일부 성분의 효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상품의 최소 매일 섭취량이 자료에 제시된 해당 성분 섭취량의 최소 15% 이상이어야 함.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특히 접수 기관의 인증서 발급 절차가 폐지돼 기존 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기업이 감수해야 했던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
- 한편, 보건부 및 지역 보건기관이 일임해 온 식품안전 관련 상품 등록 서류의 접수 업무가 지방 행정기관에 일부 이양돼 이에 대한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됨. 구체적으로 보건부와 함께 성·시 단위 인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이 상품 공표서 등록 서류를 접수하게 됐으며, 기관별 접수 서류는 품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뉨.

품목별 상품 공표 등록 서류 접수 기관

접수 기관	접수 대상
보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호식품 · 새로운 효능을 지닌 혼합 식품첨가제 · 보건부 장관 규정 식품에 사용이 허용되는 첨가제 리스트에 미포함된 첨가제 · 베트남 보건부가 규정한 사용 대상에 적합하지 식품 첨가제
중앙직할시·성 단위 인민위원회 지정 관할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영양식품 · 특수 식이용 식품 · 36개월 이하 유아용 영양식품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변동 사항 2)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취득 면제 대상 범위 확대
 - 베트남 식품안전법은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식품안전법 34 조 1항에 명시) 충족 후 이에 대한 인증서 취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음.
 -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동 인증서 취득이 면제되는 사업 유형이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됐음.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취득 면제 대상

기존 (Decree No.38/2012/ND-CP)	변경 (Decree No.15/2018/ND-CP)
① 소규모 초도 생산 ② 소규모 식품 판매 ③ 노점상 ④ 특별한 저장·보관 요건이 규정되지 않은 포장 식품 판매	① 소규모 초도 생산 ② 영업 장소가 비고정된 식품의 생산 및 판매 ③ 소규모 1차 가공 ④ 소규모 식품 판매 ⑤ 포장된 식품 판매 ⑥ 식품 용기 및 포장재 생산 및 판매 ⑦ 숙박시설 내 음식점 ⑧ 식품사업업종으로 등록되지 않는 단체 급식시설 주방 ⑨ 길거리 음식 사업

	⑩ 다음 중 하나의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체: GMP, HACCP, ISO 22000, IFS, BRC, FSSC 22000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서
--	--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변동 사항 3) 식품 대상 표기(라벨링) 규정 완화
 - 사용기한 표기 관련 문구, 라벨상 표기 의무 사항과 상품명 글자 크기, 라벨 위치 등 라벨 표기 방식과 관련한 기존의 과도한 규제 조항이 삭제되고, 의료용 영양식품·특수 식이용 식품·수입 식품에 대한 의무 표기 문구 또는 표기 사항만을 규정

품목별 신규 표기 규정

대상	표기 규정
의료용 영양식품	“Thực phẩm dinh dưỡng y học(의료용 영양식품)” 과 “Sử dụng cho người bệnh với sự giám sát của nhân viên y tế(의료 요원의 관리를 받는 환자에게 사용)” 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규정
특수 식이용 식품	“Sản phẩm dinh dưỡng (cho đối tượng cụ thể) (구체적 대상자 명시)를 위한 영양식품” 이라는 문구를 라벨 정면에 표기토록 규정
수입 식품	생산자(개인 또는 단체) 명과 주소, 상품 공표자(자체적 상품 공표 또는 상품 공표서 등록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명과 주소를 표기토록 규정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또한 일부 의무 표기 사항 면제 조항이 신설돼 표기 규정 이행에 따른 기업 업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상품 표기(라벨링) 관련 신규 면제 내용

내용	대상
보조 라벨* 부착 면제	다음 상품에 대해서는 보조 라벨 부착이 면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소비, 선물 용도로 베트남 입국자가 반입한, 관세 면제 한도 내의 상품 · 외교 특권과 면제 지위가 부여된 자에 의한 수입품 · 국경통과, 환적, 환승, 일시 수입, 재수출 및 보세 창고행 상품 · 테스트 및 연구용 샘플 · 전람회 및 박람회 전시용 상품 · 수출품 생산·가공용 상품 및 생산·수입 원료 또는 개인·단체의 내부 생산용으로서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상품과 생산·수입 원료

일부 표기 사항 표기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표면적이 10cm² 미만인 소형 포장물로서, 외부 포장지에 구성 성분, 사용 기한, 보관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표기돼 있을 시 해당 사항 표기가 면제됨. · 단, 향신료와 식품은 제외
생산일 표기 면제	· 식품 용기, 식품 접촉 포장재의 경우 생산일 표기가 면제됨.

주: 보조 라벨(Supplementary label)은 외국어로 표기된 기존 라벨상의 내용 중 필수 사항을 현지어로 번역함은 물론 베트남 현행 법규에 따른 필수 표기사항을 보완한 라벨을 의미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변동 사항 4) 행정 부처 간, 중앙-지방 정부 간 식품안전 관련 국가 관리 책임 분산 및 이양
 - 동 시행령에는 유관 부처별로 세부 관할 품목을 리스트 형태로 명시하고 있음(동 시행령 첨부 부록 II~IV).
 - 각 부처는 자신이 관할하는 품목의 생산·예비처리·가공·보관·운송·수출입 과정 전반은 물론 관할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체의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한편, 자유판매 증명서와 생산·판매 사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요건 충족 인증서를 발급해야 함. 관할 품목의 식품안전 검사 기관도 소관 부처가 지정토록 규정

부처별 식품안전 관련 관할 대상 및 발급 서류

부처명	관할 품목	관할 사업 유형 및 사업장	발급 서류
보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 생수, 천연미네랄워터 · 식용얼음(식품 가공용 얼음 포함) · 기능성 식품 · 식품 보충 미량영양소 · 첨가제, 향신료, 식품 가공 보조제 · 식품 용기, 식품 접촉 포장재 · 기타 산업무역부와 농업 및	· 식품안전 관련 국가 관리 업무전반을 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 식품 대상 GMP 기준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 건강보호식품 광고 내용 인증서 · 관할 품목의 자유판매증명서 · 위생증명서

	<p>농촌개발부 관할 품목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p>		
<p>농업 및 농촌 개발 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류 · 육류 · 수산물 · 청과물 · 알류 및 그 가공식품 · 신선한 원료 우유 · 꿀과 꿀 함유 식품 · 유전자 변형 식품 · 소금류 · 조미료 · 설탕류 · 후추 · 차 및 그 가공식품 · 커피와 커피 함유 식품 · 카카오 및 그 가공식품 · 캐슈너트 및 그 가공식품 · 기타 농산식품 · 관할 식품 품목의 생산, 가공, 판매 과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용기와 포장재 · 관할 식품 품목의 보관 · 가공 시 사용되는 얼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물 초도 생산 · 농림수산물의 경작, 축산, 수확, 채취, 어획 및 제염 전 과정 · 농산물 직판장 및 경매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품목의 자유판매증명서 · 관할 품목 생산 · 판매 사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산업 무역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주 및 알코올 음료 · 청량음료 · 가공우유 및 유제품 · 식물성 유지 · 곡물의 분과 밀가루 및 전분 · 제과제품 · 관할 식품 품목의 생산, 가공, 판매 과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용기와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마켓, 쇼핑센터, 편의점, 저장 · 유통 시스템하에 있는 사업체 및 기타 유형의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품목의 자유판매증명서 · 관할 품목 생산·판매 사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	---	---	---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앞서 언급된, 상품 안전성 공표 서류 접수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관련해 보건부가 맡고 있던 책임 일부가 지방 행정 기관에 이양된 것도 식품안전 관련 국가 관리 책임의 분산 정책으로 풀이됨.

○ (변동 사항 5) 식품 광고 관련 조항 신설

- 건강보호식품, 의료영양식품, 특수 식이용 식품 및 광고법 7 조에 따라 광고 금지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36 개월 이하 유아용 영양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상품 공표서 등록 접수 기관에 광고 내용을 사전 등록할 것을 명기함.

- 아울러 15 초 미만의 TV 및 라디오 광고를 제외한 광고물의 경우, 해당 제품이 의약품 또는 치료 효능을 지닌 의약품 대체제가 아님을 나타내는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의료진, 의료기관 및 환자의 이름이나 이미지 또는 이들이 작성한 글귀를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함.

□ 수입 식품의 식품안전 검사 관련 변동 사항

○ 동일 선적분에 대한 다수 기관의 중복 검사를 막기 위한 원칙 제시

-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가 소관 부처(보건부, 농업 및 농촌개발부, 산업무역부) 지정 국가 검사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것은 기존과 동일

- 하지만 소관 부처가 상이한 다수 식품이 포함된 선적분에 대해서는 농업 및 농촌개발부 지정 검사기관이 검사를 주관한다는 원칙이 신설돼 해당 선적의 식품안전 검사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식품안전 국가 검사 면제 대상 확대

- 상품 공표서 등록

접수증을 취득한 수입품, 수출품 생산·가공용 수입 원료, 면세점 판매를 위해 일시 수입된 제품이 식품안전 검사면제 대상에 추가 포함됐음.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 면제 대상

기존 (Decree No.38/2012/ND-CP)	변경 (Decree No.15/2018/ND-CP)
① 관세 면제 한도 내에서 개인 소비 용도로 입국자에 의해 반입된 식품 ② 외교 행낭 또는 영사 행낭 내 식품 ③ 국경 통과, 환승 식품 ④ 보세 창고행 식품 ⑤ 테스트 또는 연구 샘플용 식품 ⑥ 전람회 및 박람회 전시용 식품	① 상품 공표서 등록 접수증 취득 완료 물품 ② 베트남 입국자에 의해 반입된 물품, 입국자가 여행 전후에 발송한 일상생활 또는 여행 용도의 물품 또는 관세 면제 한도 내의 선물용 물품 ③ 외교 특권과 면제 지위가 부여된 자 개인용으로 반입된 물품 ④ 국경통과, 환적, 환승, 일시 수입, 재수출 및 보세 창고행 물품 ⑤ 테스트 또는 연구 샘플로서 개인 또는 단체가 인증한 해당 시험·연구 목적에 적합한 수량의 물품 ⑥ 전람회 및 박람회 전시용 물품 ⑦ 수출품 생산·가공을 위해 수입된 상품 및 생산 원료 또는 개인·단체의 내부 생산용으로서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상품 및 생산 원료 ⑧ 면세점 판매를 위해 일시 수입된 상품 ⑨ 베트남 정부 및 총리 지시에 따라 긴급한 필요를 위해 수입된 물품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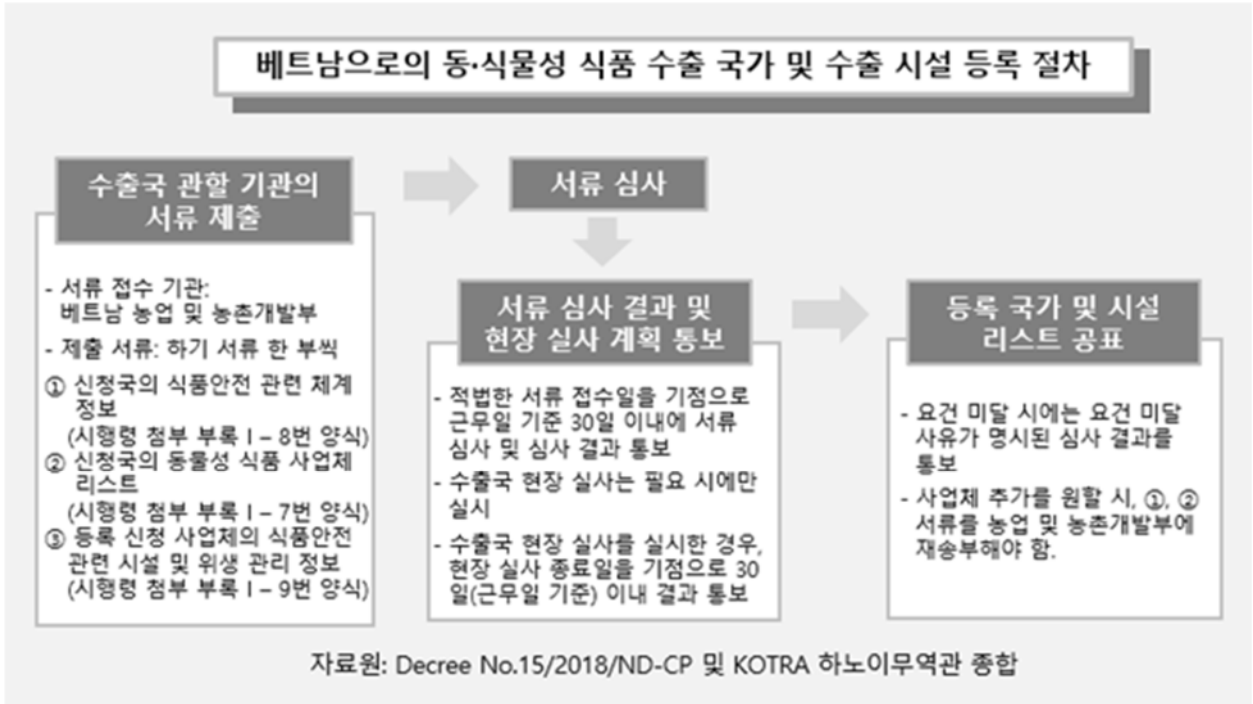
○ 동·식물성 식품 원료 수입 관련 규정 신설

-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관련 검사 규정으로서 동·식물성 식품 원료와 관련해 새로운 조항(14 조)이 신설됨.

- 동 조항에 따르면 식품 생산용으로 수입되는 육상·수생 동물 및 식물 제품의 경우 원산지 및 생산시설과 관련해 일정 요건 충족이 요구됨.

* 가공 포장된 식품, 베트남 기업이 해외 수출했으나 재반송된 식품, 식품안전 국가 검사 면제 대상은 동 규정 이행 대상에서 제외

- (원산지 요건) 베트남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관리 감독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으로의 동·식물성 식품 수출 등록국 리스트'에 등재된 국가 및 영토
- (식품 생산용 육상 및 수생 동물 제품에 대한 생산시설 요건) 베트남 관할 기관이 베트남 규정에 따른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로 공인한 생산 시설



- 또한 수입된 동물 및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입품의 경우, 각 선적분에 대해 수출국 관할 기관이 발급한 식품 안전성 보증 인증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외 어선이 포획·해상 가공해 베트남에 직접 판매한 수산물은 제외

○ 검사 방식 간소화·체계화로 유연성 제고 및 융통성 확보

- 수입 식품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일반 검사·약식 검사·엄격 검사의 세 가지 검사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기존과 같으나, 일반 검사 방식이 기존 대비 완화된 것이 눈에 띄는 사항

- 신규 시행령에서는 일반 검사 방식을 수입 선적분에 대한 서류 검사로만 규정하고 있어, 서류 검사는 물론 표본 추출을 통해 감각 검사 및 라벨링·포장·보존 상태 등을 모두 검사하던 기존 방식 대비 검사 방법이 크게 간소화됨.

베트남의 수입식품의 식품안전 검사 방식

구분	검사 방식	대상
약식 검사	1년간 수입 선적 물량 가운데 최대 5%에	① 베트남이 가입한 식품안전 검사 활동 관련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관할

	상당하는 선적 물량(세관 기관에 의해 랜덤으로 선정)에 대해서만 서류 검사 실시	기관으로부터 식품 안전성 인증서를 취득했거나 수출국 관할 기관으로부터 베트남 법규에 부합하는 검사 결과를 확보한 물품 또는 선적분 ② 최근 12개월간 일반 검사 방식에 따라 3회 연속 수입 요구사항을 만족시킨 물품 또는 선적분 ③ GMP, HACCP, ISO 22000, IFS, BRC, FSSC 22000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물품 또는 선적분
엄격 검사	서류 검사 및 샘플 검사 실시	① 이전 검사에서 수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한 물품 또는 선적분 ② 이전 검사 및 검사에서 관련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한 물품 또는 선적분 (있을 시) ③ 보건부, 농업 및 농촌개발부, 산업무역부, 성 단위 인민위원회, 해외 관할 기관 또는 생산자의 경보 발생 시
일반 검사	수입 선적분에 대한 서류 검사만을 실시	① 약식 검사와 엄격 검사 대상을 제외한 모든 경우 ② 다음의 경우에 한해 엄격 검사에서 일반 검사로 검사 방식이 전환됨. · 엄격 검사 방식에 따라 3회 연속 수입 요구사항을 만족시킨 경우 · 엄격 검사 실시 대상 ③의 경우, 보건부, 농업 및 농촌개발부, 산업무역부의 엄격 검사 중단 통보 문서가 발행된 경우

자료원: Decree No.15/2018/ND-CP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아울러 약식 검사의 주체가 국가 검사 기관에서 세관 당국으로 변경된 것이 또 다른 개정 내용. 이에 따라 화주의 검사 결과서 수령 및 세관 기관에의 제출 과정 없이 검사 후 통관이 바로 진행됨에 따라 약식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임.

▣ 신규 시행령 발표에 대한 기업 측 반응

○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부 띠엔 록(Vu Tien Loc) 소장, “신규 시행령 내용은 식품안전 부문의 일대 변혁”

- 이번 시행령 공표에 대해 부 띠엔 록(Vu Tien Loc) 소장은 “신규 시행령이 실시되면 행정 비용이 90% 이상이 줄어들고, 약 1000만 시간, 3조 7000억 동에 달하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식품안전 관리에 있어 사회적 비용만 초래한 형식적 행정 절차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함.

- 하지만 신규 시행령은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정부의 변화된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보장과 관련한 기업들의 책임 부담이 높아졌음을 경고

- 아울러 기업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이를 시행령 개정에 반영한 정부 총리실과 보건부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다른 부처에서도 기업 불편 감소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말도 덧붙임.

○ 현지 식품 수입 기업,

“정부 의도 좋으나, 세부 시행규칙 없어 기업과 행정 당국 모두 혼란 상태”

- 한국으로부터 각종 기능성 식품 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 기업 Nasol Pharma 사의 뚜이엔(Tuyen) 사장은 “신규 시행령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 기업 자체적인 상품 안전성 공표를 허용하고 있어 행정 수속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함.

- 하지만 “시행령이 발표된 즉시 발효된 데다 구체적인 안내 법령(시행규칙)이 함께 나오지 않아 기업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며, 기존 방침에 따라 작성된 서류도 접수가 안 돼 관련 당국의 행정 업무가 마비 상태라고 전함.

- 시행규칙 발표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름에서 한 달 후이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워낙에 많은 내용이 개편된 터라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고 답함. 또한 “일부 업무가 지방 행정 기관으로 이양됐는데, 새로운 담당자가 업무를 익히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시행규칙이 발표되더라도 당분간은 혼란 상태가 계속될 것” 이라는 예상도 내놓았음.

□ 시사점

○ 식품안전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가 예상돼 관련 기업의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신규 시행령에서는 사전 관리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식품안전과 관련한 기업 자발적인 규정 준수와 관리 제고를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관리 방침 변경에 따라 베트남 정부 당국의 식품안전 관리·단속 강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각심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무엇보다 신규 시행령 및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규칙의 내용을 숙지하고, 현지에서의 식품 사업 및 수출입에 필요한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밟는 것이 필요

○ 보다 우호적인 사업 환경 조성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

- 그 어느 때보다 민간 기업 발전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베트남 현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
- 실제로 2017년 7월 사법부를 시작으로 2018년 2월 말 정보통신부까지 총 18개 행정 부처 및 기관이 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를 위한 결의안을 발표한 상태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규도 속속 발표되고 있어 내국 및 해외 기업을 위한 사업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이번 경우와 같이 세부 안내 규정 없이, 또는 기업들이 규정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신규 시행령을 바로 발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한국 기업은 자사 업종 관련 현지 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현지 정책 및 제도 변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함.